■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4.4.17>

[] 폐기물처리업자 [] 휴업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업 신고서
[] 재개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⑦ 업종		⑧ 허가(신고)번호	
⑨ [] 휴업 [] 폐업 [] 재개업 연월일	. . .	⑩ 재개업 예정 연월일 (휴업인 경우)	. . .
⑪ [] 휴업 [] 폐업 [] 재개업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휴업
[] 폐업 을 신고합니다.
[] 재개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시 · 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